

대구지방법원 2022. 6. 24 선고 2021가단14548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

담당변호사 장익현

피고A

소송대리인 B

변론 종결2022. 6. 10.

판결 선고2022. 6. 24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1. 1. 18.자 합의해제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. 1. 18. 접수 제9530호로 말소등기 된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0. 2. 7. 접수 제22732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청구원인

1.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(피보전채권)

가. 원고는 위 B의 보증의뢰에 따라 위 B와 다음과 같이 보증을 약정한 바 있습니다.

2018.12.11.	금85,000,000원	2019.12.11.
2018.12.11.	금85,000,000원	2026.12.11.

나. 위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위 B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, 기타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.

다. 위 B는 전항의 각 약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.

①	2018.12.11.	C	금85,000,000원	2019.12.11.	중소기업자금	2018.12.11. (그후, 2021.12.10.로 보증기한 변경)
	금100,000,000원					
②	2018.12.11.	D	금85,000,000원	2026.12.11.	중소기업시설자금	2019.2.7.
	금100,000,000원					

라. 그러나, 위 B는 2021.2.16. 이자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, 그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.

이에, 원고는 위 B의 보증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각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 하였습니다.

2021.3.23.	C	중소기업은행	금85,590,603원	금915,200원(21.3.23.)금25,248원(21.4.22.)
금84,650,155원				

2021.3.23.	C	중소기업은행	금85,590,603원	금915,200원(21.3.23.)금25,248원(21.4.22.)
2021.3.23.	D	중소기업은행	금85,677,738원	금925,680원(21.3.23.)금41,833,194원(21.4.22.)
금42,918,864원				

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손해금의 이율은 보증채무이행(대위변제일) 다음날부터 연8% 입니다.

그런데, 보증번호 D의 경우 2021.3.24.부터 2021.4.22.까지 발생한 손해금 557,273원을 2021.4.22. 회수하였으므로 그 다음날부터 연8% 입니다.

마. 따라서, 위 B는 원고에게 금127,569,019원(= 대위변제금 84,650,155원 + 대위변제금 42,918,864원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.

2. 사해행위취소 청구

가. 피고는 2020.2.7.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,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.)에 관하여

2020.2.3.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위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.

그런데, 위 B는 2020.7.15.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가압류를 당하자 2020.11.5.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고, 자신의 신용보증사고(2021.2.16.)를 일으키기 얼마 전인 2021.1.18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.1.18.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(순위번호 5번)를 말소하였으며,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은 다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.

나. 당시, 위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.

더욱이, 위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피고는 위 B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.{원고는 피고를 B의 모(母)로 알고 있습니다.}

따라서, 당시 위 B는 자신의 신용보증사고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와 협의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증여받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피고 앞으로 넘긴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.

다. 그렇다면, 위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합의해제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

합의해제에 의해 2021.1.18. 말소등기된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0.2.7. 접수 제22732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가 이행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.

3. 결론

이에,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갑제1호증 내지 8호증(가치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21. 3. 말경 소외 B에 대하여 금127,569,019원(= 대위변제금 84,650,155원 + 대위변제금 42,918,864원) 및 이에 대한 지연금 손해 채권을 가진 사실, B는 원고가 위 채권을 취득하기 전인 2020. 2. 7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. 따라서 원고는 위 채권의 보유자로서 피고와 B 사이의 2021. 1. 18. 증여계약 합의해제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.

나. 무자력

B는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한 2021. 1. 18. 당시 무자력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. 따라서 피고와 B의 위 증여계약 합의해제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. 1. 18. 접수 제9530호로 말소등기 된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0. 2. 7. 접수 제22732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신중화

별지